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오영주

●대통령령 제3477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등”을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7호”를 “법 제16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가”

를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시·도”를 “시·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시·도의”를 “시·도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시·도의”를 “시·도등의”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시·도”를 “비수도권 시·도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화특구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특화특구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49조제8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운영 등)”을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각각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시·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로부터”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부터”로, “시·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실증특례”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제2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6항”을 “법 제86조제9항”으로, “시·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법 제86조제6항”을 “법 제86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

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실증특례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시·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증특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의 내용

2. 법령 정비 추진일정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시·도지사는 제9항 또는 제10항”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으로 한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8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을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으로,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86조제6항”을 “법 제86조제9항”으로, “제90조제8항”을 “제90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을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0조제12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제12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제12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0조제11항”을 “제90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8항”을 “법 제90조제10항”으로, “시·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0조제8항”을 “법 제90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90조제9항”을 “법 제90조제11항”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한 자는 법 제90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임시허가서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의를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를 “비수도권 시·도등”으로 한다.

제73조 중 “시·도는”을 “비수도권 시·도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검토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236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요청한 자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요청하도록 하는 등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절차 등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 정비 대상 법령의 내용, 법령 정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